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159
----------	-----

발의년월일 : 1997년 12월 27일
 발의 의원 : 유남열 의원의 10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는 민원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조사하여 영등포구정의 신뢰회복과 구민의 민원 및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골자

신길5동 대림변전소 시공사 삼회건설 관련자 민원, 신길1동 60번지 경남아파트 민원, 영등포동 94 지하도로 확장 관련 민원

민원조사 계획서

1. 조사의 목적

의회의 의정활동중 풀리지 않고 구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중 특히 신길5동 대림변전소 시공사 삼회건설 관련 민원과 신길1동 60번지 경남아파트 진입로 인접 오피스텔 차량 진입 설치민원, 영등포동 94 지하도로 확장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 제도나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 가는 부분을 해소하여 주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조사 사안의 범위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진 신길5동 대림변전소 시공회사 삼회건설 관련자의 참고인 진술청취, 신길1동 60 경남아파트 진입로 인접 오피스텔 차량 진입로 설치 민원, 영등포동 94 지하도로 확장 관련 민원사항을 조사.

3. 조사방법

- 조사와 관련된 집행기관 책임자의 조사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서류 제출
-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 증언청취
- 관련공무원의 출석 질의 답변
- 현장확인.

